

동 지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7-1판)(“21.6.11 시행)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21.7.1 시행)에 따라 수정 · 보완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개별 사회복지 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8판)

---

2021. 7. 1.



보건복지부

# 목 차

I. 개 요 .....	1
1. 목 적 .....	1
2. 기본방향 .....	2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	2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2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3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4
4. 접촉의 최소화 .....	6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사항 .....	6
6.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7
7. 행정사항 .....	8
III.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 .....	9
IV. 지자체 협조사항 .....	16
V.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적용 .....	16
▷ 불 임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행동수칙 .....	17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수칙 .....	19
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관리자 방역수칙 .....	21
4.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22
5. 자가격리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	25
6. 사회복지시설 소독안내 .....	27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	29
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정보 .....	30
9.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31
▷ 서 식 <	
1. (서식1-1) 시설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	33
2. (서식1-2) 시설 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	34
3. (서식2) 접촉자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임상증상기록지) .....	35
4. (서식3-1)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	36
5. (서식3-2)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	37
6. (서식4)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체크리스트 .....	38
7. (서식5)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	39
▷ 참 고 <	
1. 사회복지시설 종류 .....	40

# I 개요

## 1. 목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체계가 5단계에서 4단계 개편·시행(7.1) 및 예방접종 추진에 따른 시설 운영방안 제시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대응절차와 조치 사항을 재정비하여 피해 최소화 도모
-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참고1)
- 예방접종완료자는 정부의 생활방역지침 등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해서만 예외를 인정
- 본 지침은 시설 내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특성

- - 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며  
대부분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 그 외 인후통, 두통, 가래,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
- 전파 방법
  - (비말전파)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이 기침, 재채기를 했을 때 발생한 비말(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호흡기 점막으로 들어가 바이러스가 점막을 통해 침투하여 감염됨
  - (접촉전파) 감염된 사람의 비말이 물건이나 표면 등에 묻은 경우, 다른 사람이 이 물건이나 표면을 손으로 만진 후 눈, 코, 입 등을 만져서 감염
- 전파 특성
  - 증상이 경미한 발생 초기부터 전파가 일어나고, 전염력이 높고
  - ② 닫힌 공간 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이뤄지는 경우 확산의 규모가 커짐

## 2. 기본방향

- 각 지자체는 전국·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될 경우 사회복지시설 운영 범위를 신속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사전 조치
  - 다수인이 이용(생활)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코로나19 관리 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시설이용자, 종사자 및 방문객 등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기 인지 및 전파 방지 조치 실시
    - \* 「위생 · 청소/소독/환기 · 근무 환경 개선, 발열 등 주기적 모니터링 및 업무배제
  - 시설 내에서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 방역 조치 전제하, 운영 유지 원칙, ②지역 내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책임하에 자율적인 서비스 범위 · 대상 조정
  -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이용인원을 자율 조정하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정상 운영하고, 3~4단계는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거리두기 단계별 기본적인 방침 준수하에 예방접종완료자(1차 접종 완료자 포함) 대상으로 제한 완화

▲ 1차 접종완료자: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예방접종완료자: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안전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확인방법: 불임 9 참고

## I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조치사항

### 1. 코로나19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사회복지시설 내 감염관리체계 구성
  -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코로나19 예방 및 관리 책임성 부여, 근무자 관리, 시설 환경관리, 상황 발생 시 즉시 대응체계를 유지도록 함
    - \* 감염전담 담당자(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등
    - \*\* 시설 내 방역관리자는 YOUTUBE에 “방역관리자” 검색 후 질병관리청 아프지마 TV 계정에서 방역관리자 교육콘텐츠를 통하여 역할 숙지

- 종사자 · 이용자 · 거주자 · 방문자(자원봉사자 포함) 등 명단 작성 · 보관
  -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권고)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의심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 발생 시 즉시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sup>\*</sup>과의 비상연락체계 구축
  - \* 시도 및 시군구 소관부서-관내 보건소-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시설 이용자, 시설 종사자 등 감염병 예방 교육 · 홍보
  - 시설 종사자 대상 코로나19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등 교육
  -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관련 여행력이 있는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주요 장소에 안내
  - 코로나19 예방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및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 장소에 부착
    -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www.cdc.go.kr](http://www.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환경 위생 관리
  -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비수동식 수도꼭지 등), 손 세척제(액체비누, 알콜 70% 이상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씻기 후에는 종이타월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며 기침 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sup>\*</sup>에 대한 소독 강화(일 2회 이상)
      - \* 문손잡이, 난간,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탁자,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는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하며,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소독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환기 실시(일 3회 이상 자주)
  - \* 환기는 상시로 하되, 에어컨 가동 시, 2시간마다 1회 이상 권고(생활속거리두기 세부지침 ‘에어컨’)
-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손 소독제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 3. 시설 입소·출입 시 관리 강화

- 시설 종사자 등은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출입 안내
- 시설 이용자·거주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호흡기 증상 확인 (서식 1)
  - ⇒ 시설 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 (1)종사자는 관련 업무 배제, 방문자는 출입 금지
    - (2)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1)+(2): 유증상자 코로나19행동수칙 참조),
    - (3)거주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 다음과 같은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출근 또는 이용 중단할 것
  - 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출근 또는 이용을 중단할 것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타인과의 접촉 및 외출을 자제하고, 자택에서 3~4일간 경과 관찰하고 출근 중지
  - ⇒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진료

#### ◆ (참고) 코로나19 행동수칙 中 [유증상자]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 보건소((☎1339, ☎지역번호+120)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② 해외 여행력 있는 시설 종사자 또는 이용자는 2주간 출근 금지  
(재택근무, 온라인 근무) 또는 시설 이용을 중단할 것

- 시설 관리자는 상기 ①·②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휴가를 주거나 휴관(이용중단) 조치를 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 \* (예시) 근로자 : 재택근무 또는 각종 휴가 / 어린이 등 : 결석 시 출석 인정
- 시설 관리자 등은 시설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또는 이용을 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시설 관리자 등은 가능한 영유아, 노인, 임신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 자제를 안내하고 관리할 것
- 의심환자 발생 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실을 시설 내 확보
  -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 □ 시설 거주자의 면회 · 외출 · 외박 관련

- \*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시설별 면회 수칙을 마련할 것
- 면회는 철저한 방역 조치 전제하에 실시하되, 하루당 실시 인원 제한,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된 지역의 면회자 제한 등 시설 내 감염 위험 최소화 도모
  - \* 단, 외부 감염전파 차단을 위해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를 권장하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대유행 단계) 발령 시 대면 면회 금지
- 면회객, 거주자 둘 중 한쪽이라도 백신 예방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2주 경과)인 경우 1~3단계 접촉 면회 허용
  - \*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후 면회 실시
- 외출·외박도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 하에 가능하며 단계 격상으로 금지 원칙 적용 시 ①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개학에 따른 등교(원),

② 생계유지 등을 위한 직장 출퇴근 등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해당 거주자의 별도 격리 생활공간 마련 · 운영

\* 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발령 시 외출·외박 전면금지

#### □ 이용자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 자원봉사자 ·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 예외적으로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 후 출입(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실시)
  - <서식3> 작성 후 출입,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이 있으면 출입 금지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토록 안내

### 4. 접촉의 최소화

- 시설 종사자 간 또는 방문객 등과 약수 등 접촉하지 않기
  - \* 시설 내 종사자가 감염원이 되어, 이용자에게 전파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종사자의 감염 관리에 철저
    - 종사자 방역수칙 교육 및 사전에 숙지하여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종사자 간 식사, 모임, 회의 등을 할 때에도 개인방역수칙 준수하도록 관리 철저
- 출 · 퇴근 시간, 식사시간 교차 실시 \* 유연근무제, 점심시간 시차 운영 활용
- 실내·외 프로그램은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해당 공간의 4m<sup>2</sup>당 1명 범위 내에서 운영 가능
- 좌석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준수(띠워 앉기, 가림막 등 포함)

### 5. 시설 휴관(원) 시 조치

#### □ 휴관(원) 시, 취약계층 긴급 돌봄서비스 지속 제공

- \* 거리두기 단계 관계없이 시설별 긴급 돌봄서비스 방안 마련, 시설 운영 중지 시 빈틈없는 서비스 제공 조치
-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 「코로나19 유행대비 사회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 ('20. 2. 21. 既 배포) 및 시설별 개별지침 활용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41(2020.02.21.) 既 시행

## 6.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의심환자는 격리실에 격리,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는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 지시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 거주자가 이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격리공간에서 보건소 담당자가 검체 채취함
- (의심)환자의 이송 이후에는 차아염소산나트륨, 알코올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장소를 소독
- (의심)환자와 접촉한 거주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서식 2)
  - 의심환자와 접촉한 종사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하며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업무 복귀
  - 의심환자와 접촉한 거주자는 의심환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실에 배치하고 의심환자의 검사결과 음성이면 해제
  - 단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하여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관할보건소에 연락도록 조치
    -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건용마스크, 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손위생 철저히 준수

## 7. 행정사항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복무기준 관련
  - (유급휴가 처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종사자에 대하여 치료·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 처리(201.30. 시달)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업무배제 시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을 대상시설에 우선 투입(201.29. 공문시행)
- 사회복지시설 백신휴가 실시 관련 '21.4.1.부터 적용
  - \* 시설별 특성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별도 실시방안 마련·시행

### - 사회복지시설 공통지침(안) -

- 임금 손실이 없도록 '별도의 유급휴가' 실시를 원칙으로,
  - 각 사업 및 시설 여건에 따라 필요 시 예외적으로 병가/연차유급휴가 등도 활용 가능
- 각 지자체는 관내 시설별로 자체 예방접종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안내 및 지원 실시
  - 거주자 접종 시 이상증상 발현 모니터링 가능토록 종사자 접종시기 조율
  - 접종일 분산, 근무시간 조정, 유휴인력 활용 등을 통해 접종 및 백신휴가에 따른 대체인력 사전 강구
  - 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백 우려 시에는 시기·지역·직무별 소요를 사전에 협의하여 대체인력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인력 활용
- \* 각 시설은 대체인력 활용 필요 시 시·도 대체인력지원센터·사회서비스원 담당부서를 통해 필요인력 지원 요청
- 중앙(소관부서) 및 지자체는 접종 기간 중 서비스 제공 이상 유무 모니터링 실시 \* (시설→시·군·구→시·도→복지부 시설 소관 부서)
- ※ 각 시설(사업)별로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별도 지침 우선 적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여름휴가 분산 계획 관련(‘21.6.25. 공문시행)
  - (여름휴가 분산) 각 시설 소관 부서에 휴가기간을 6월5주~9월3주(12주)로 확대하여 종사자 휴가 및 근무계획 수립하도록 권고·안내
  - (모니터링 실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자체 현장점검과 민관합동 점검을 활용하여 휴가 근무계획 및 운영사항 모니터링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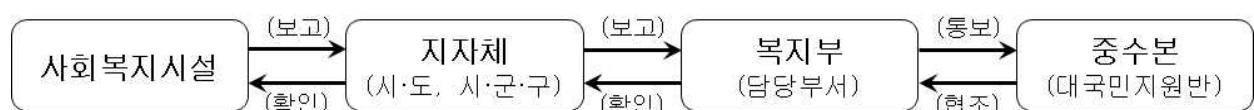
### III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

#### □ 사회복지시설 운영 유지 세부 가이드라인

##### ○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 ( 및 사업부서)와 자체, 사회복지시설간 연락체계 구축 및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 지정
  - \* 감염관리책임자 :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시설 내 방역물품 비치 파악 등 수행
  - \*\* 시설의 직원을 방역관리자로 배치하되, 경로당과 같이 직원이 없는 경우 이용자가 방역관리자로 활동
- 감염자 발생, 방역수칙 위반 등 특이사항 및 방역조치 점검 시설은 자체에 보고, 자체는 사실관계 조사 후 복지부 보고

< 사회복지시설 코로나19 대응 체계 >



##### ○ 방역조치 점검

\* 대응지침상 양식 활용

- ( ) 이용자·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2 ) 및 방역 수칙 교육 결과\*를 소관 자체(시·군·구)에 보고\*\*
  - \* 종사자 대상 방역수칙 준수 교육 실시 결과 포함(지침 시행시 1회, 이후 신규 직원 대상)
  - \*\* 자체 사정에 따라 보고의 형식과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소관 시설 전체에 지침을 포함하여 공문 등 방법으로 안내할 것
- (자체) 시설 운영 재개 또는 운영 범위·대상이 확대될 경우 즉시 해당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점검한 후 운영 재개·확대

## ○ 공통 적용 사항

- 운영 중지 시설의 운영 재개시, 사전 조치 신속 시행(지자체·시설)
  - 시설 소독 및 방역계획 수립·시행, ② 시설운영수칙 및 프로그램 운영 방안 마련, ③ 방역관련 물품 확보, ④ 감염병 관리대책 점검·실시 등
-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지역별·시설별 위험도를 고려<sup>\*</sup>하여 시설 운영 여부 및 서비스 범위·대상 등 결정
  - \* 지역의 확산 추세 및 의료자원, 시설 주변의 확진자 현황 및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현황 등을 종합 검토하여 시설(서비스) 특성에 맞게 세부사항 결정
- 시설 소재지 지자체와 법인 소재지 지자체는 협력·협조 체계를 구축·유지하여 지자체가 타 행정구역에 설치·운영 중인 사회 복지시설이 방역 사각지대<sup>\*</sup>가 되지 않도록 합동점검 등 중점관리
  - \* 지자체간 역할정립에 대해서 양 자치단체 협의사항을 우선하되,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 코로나-19 감염병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소재지 지자체에서 관리할 것

< 참고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체계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 명칭	■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 지역 유행/ 인원 제한	■ 권역 유행/ 모임 금지	■ 대유행/ 외출 금지
개념	■ 통상적인 방역·의료 대응 여력 이하 환자 발생	■ 지역 방역·의료 대응 한계, 권역·중앙의 협조 필요	■ 권역 대응 한계, 전국적 방역·의료 자원 동원 필요	■ 전국적 방역·의료체계 한계 도달
사회복지 시설				
방역관리 하에 공적 서비스는 필수적으로 운영				
이용인원 자율 조정( 및 시설 판단)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		

## ○ 단계별 대응 가이드라인

- 1단계(억제 단계)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설 운영
  - \*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비대면서비스 병행 및 시간제·사전예약제 권장
  - \* 생활시설은 외출·외박 제한적 가능, 1일 인원 통제하여 면회 실시
- 2 (지역 유행 단계) : 방역 강화 및 활동 제한
  - \* 신체활동 제한, 고위험군 시설은 시간제 운영 및 사전예약제 전환

- 3단계(권역 유행 단계) : 50% 이하( 100인) 운영

- \*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
- \* 생활 시설은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및 비대면 면회 실시

- 4 ( 단계) : 이용정원의 50% 이하(최대 100인) 운영

- \* 지자체 판단하에 인근의 확진자 현황, 감염 가능성, 방역조치, 건축물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축소 또는 중지 여부를 결정
- \*\* 시설 운영 축소 또는 중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세부 가이드라인>

구분	주요 내용
1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이용 시설
	생활 시설
2단계 (운영유지)	방역 조치
	이용 시설
	생활 시설

	구분	주요 내용
3단계 (운영축소)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행권역) 서비스 이용 인원을 50% 이하로 제한하여 운영(이용시설)</li> <li>▶ (타 지역)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2단계 조치 유지 가능</li> </ul>
	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li> <li>▶ 실내에서 식사 등 음식물 취식 금지, 물 등 음료는 개인별로 섭취 가능</li> <li>▶ 전 시설 시간제·사전예약제 원칙</li> </ul>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출·외박 원칙적 금지, 외부 출입 인원 통제 수업을 위한 등교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만 외출·외박 가능</li> <li>▶ 대면 면회 금지, 비접촉·비대면 면회 실시</li> <li>▶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li> </ul>
4단계 (운영축소)	방역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적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원칙</li> </ul>
	이용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시간대 프로그램(서비스) 대상을 이용 정원의 50% 이하가 되도록 조정(이 경우 종사자를 포함하여 최대 100인을 넘을 수 없음)하며 격렬한 신체 활동 금지</li> <li>▶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정원의 50% 이하 범위 내에서 취약계층 대상 긴급돌봄서비스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제공 ※ 단, 긴급돌봄 시 철저한 방역 조치하에 지역별 감염 확산세, 돌봄수요 등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인원 조정 가능</li> </ul>
	생활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박 전면금지, 외부 인원 출입 금지, 비접촉·비대면 방식을 제외한 면회 금지</li> <li>▶ 종사자에 대한 격일제 근무 등 유연근무 실시 권장</li> </ul>

\* 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아래 사항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본 사항을 안내하기 바람

## □ 서비스 제공 유지 방안

### 서비스 제공 기본 원칙

- ◆ 4단계에서 시설 운영 축소·중지하더라도, 긴급돌봄  
( 등)\* 및 지자체장이 지정한 필수 서비스 최대한 운영·유지

\* 아동(도시락, 식사 지원 등), 노인(안부 전화, 도시락 등), 장애인(활동지원) 등 유지, 보호자(노인·장애인) 부재 등 사유로 지속적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긴급돌봄 지원

-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이 방역조치가 원활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 유지하여 취약계층 소득보전 도모( 시 격일제 등 유연근무)

\* 자활사업(기존 2단계 발령 시 250개 기관 중 약 230개 기관은 방역 조치 후 운영)  
노인일자리(기존 2단계 발령 시 74만명 중 일자리 중 50~60만명은 방역 조치 하 활동)

- ·보육시설 거리두기 조치로 시설이 휴원( 돌봄 권고)하더라도 긴급돌봄( ) 서비스는 제공 유지

\* 일률적 휴원 권고 대신 지자체에서 지역 코로나19 현황 등 고려하여 제한적 운영 원칙, 종사자 복무 관리 계획 수립, 집단행사·교육 취소·연기, 외부인 출입·접촉 금지 원칙 준수

- 영·유아 특성을 감안하여 음식물 취식 허용 등 요건을 다소 완화할 경우 출입자, 물품·시설·공간에 대한 방역조치 강화

- 지자체에서 발생 현황, 유동 인구,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 가능하며, 이용 중지 조치 시 대체 서비스 제공\*

\* 홀로 계시는 어르신 및 기저질환 등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에 안부 확인 등 관리와 함께 도시락 배달 등 대체식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등 서비스 유지

- 장애인·노인생활시설의 경우 시설 내 외부인 출입·접촉을 엄격하게 거주자·보호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조치 시행

\* 비대면 면회 허용, SNS 등을 통한 동영상·사진 주기적 게시, 외부인과 접촉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외활동 허용 등

## □ 예방접종자 대상 이용제한 완화[특례]

### 완화 방향

- 방역 목적 달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거주자·가족 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접촉면회 확대
- 백신접종에 따른 면역형성을 고려하여 시설 프로그램 운영 가능범위 확대
- 시설을 이용하는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시설 내 식사 제공 허용
- 정부의 방역지침 준수 하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제한없이 외출·외박 허용
- 예방접종이 완료된 자원봉사자 출입 허용 등으로 시설 운영 정상화 도모

### <① 면회>

- (완화) 거주자, 면회객 중 최소 한쪽이라도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 모두 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아래 수칙 준수하에 접촉면회 허용
  - ①(접종완료) 거주자 또는 면회객 접종완료 시 접촉면회 가능
  - ②(미완료) 시설장 등이 거주자의 임종, 의식불명 등의 긴급한 상황,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시설장 등 책임자가 인정할 경우 면회객 PCR 음성확인서(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지참, 보호용구\* 착용

\* KF94(또는 N95) 마스크+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시설에서는 보호용구 착·탈의 방법 안내 필요

### < 접종완료 여부에 따른 면회 수칙 >

접종 완료여부	유형	거주자	면회객	방역수칙
	①	○	○	( ) ▲, (면회객) ▲
	②	X	○	(거주자) ▲, (면회객) ▲
	③	○	X	(거주자) ▲, (면회객) ▲
	④	○	X	(거주자) ▲, (면회객) ■
	⑤	X	X	(거주자) ▲, (면회객) ■

▲ 마스크 착용(KF94, N95) ■ 마스크 착용(KF94, N95) 및 PCR 음성확인서(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지참

※ 시설 1차 접종률 75% 이상 시 유형 ③적용, 75% 미만 시 ④적용

※ ⑤의 경우에도 임종이 임박한 경우, 현장책임자 판단 하 PCR 음성확인서 없이 보호 용구 착용만으로도 접촉면회 실시 가능

## <② 프로그램>

- (완화) 1 접종완료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 대상 프로그램 적극 운영     접종자로만 구성 시 사전예약제, 면적당 인원 제한 면제
  - (1차 접종완료자)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비말발생이 비교적 적은 프로그램 적극 운영 권장
  - (접종완료자) 프로그램 전후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하에 노래 교실, 악기 강습 등 비말발생 프로그램 운영 가능

## <③ 이용시설 내 식사>

- (완화) 예방접종 완료자 시설 내 칸막이 또는 띄어앉기 환경에서의 음식섭취 허용

## <④ 외출·외박>

- (완화) 방역지침 준수하에 예방접종 완료자 비규제

## <⑤ 외부인 출입>

- (완화) 예방접종이 완료된 ①자원봉사자, ②시설·장비 보수 기사, ③외부 강사 등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마스크착용 및 증상확인)하 출입 허용

제시된 면회, 프로그램, 식사, 외출·외박, 외부인출입 완화방안에 대해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사정 및 특성에 따라 시설 소관부서에서 달리 적용 가능

## IV 지자체 협조사항

- (현장지원) 종사자 및 대상자 관련 안전에 엄중하게 대처하되 불필요한 불안감에 서비스 제공 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수행기관 업무지원 확대 필요
  - (감염관리책임자) 시설 내 감염관리책임자(방역관리자) 등을 지정토록 조치 필요(방역관리자 역할에 대해 교육콘텐츠를 통해 숙지)
  - (연락체계 구축) 시설 내 의심환자 등 상황 발생 시 즉시 신고를 위한 관할 시군구 및 시도 비상연락체계 구축
  - (격리시설 마련) 사회복지시설에서 다수의 자가격리자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여 격리시설(1인실 원칙)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발열체크 등 확인)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 이용자, 거주자 및 방문자 등에 대한 체온 측정 및 기록하도록 조치 필요
- (시설 상시 모니터링) 지자체는 사회복지시설 대응지침 준수 여부 등 점검 모니터링 지속 필요 등
  - 특히, 이용시설 운영재개 전 시설별 사전준비사항 점검 실시
- (시설휴관) 지자체와 시설이 협의하여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필요

## V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적용

- 본 지침은 사회복지시설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의 성격
  - 개별 사회복지시설의 특성 및 사정에 따라 별도 대응지침 마련 등으로 현장에 적용하기 바람

**. 다중이용시설****I. 감염예방** **개인 위생 교육·홍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위생환경 개선(손제정제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청소, 소독 및 환기 강화****– 사람의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등에 대한 소독 강화**

\* 문 손잡이, 난간, 회장실 및 다양한 터치 장치, 책상, 테이블, 의자, 전화, 컴퓨터 키보드, 엘리베이터 버튼 등

**– 시설 내 공기정화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II. 직원 및 방문객 관리 강화** **직원 및 시설종사자, 방문객 출입시 발열 확인**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직원 또는 방문객은 출입 금지

 **사전에 유증상자는 출근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 **코로나19 발생국가·지역 여행력 있는 직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전환****III. 사회적 거리두기** **종사자 또는 방문객 등과 서로 악수를 하지 않는 등 접촉하지 않기** **직원좌석 간격(최소 1m)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출·퇴근 시간, 점심시간 교차실시, 일정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실내 휴게실, 다기능 활동 공간 등 다중이용공간 일시 폐쇄** **집단 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 +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 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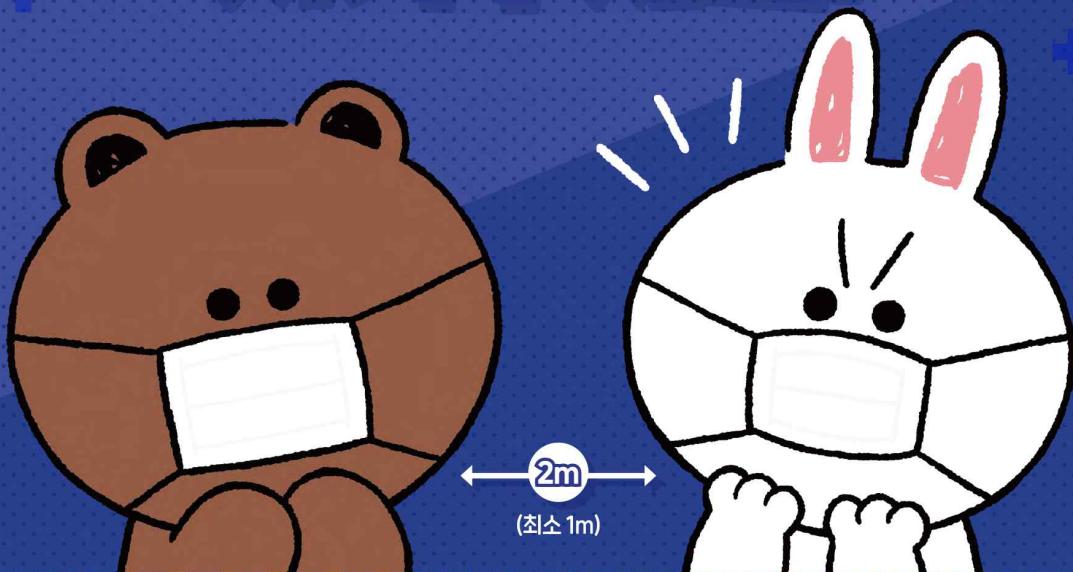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2021.06.17

질병관리청 X LINE FRIENDS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입과 코를 가려 **마스크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 외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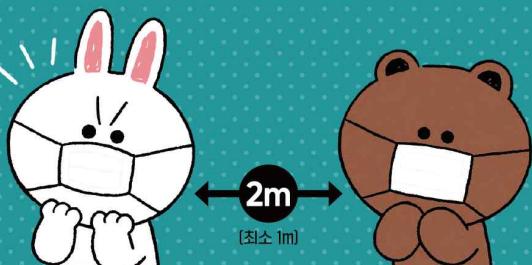
나와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지켜주세요!**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 접촉 최소화 하기**



입과 코를 가려 **마스크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최소 1일 3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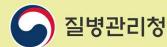


직장동료, 함께 사는  
 가족 외 지인과는  
**비대면으로**  
**만나기**



©LINE

2021.04.30



언제 어디서나  
방역수칙 준수로 안전하게!

# 방역관리자판

꼭 지켜야 할 기본적인 코로나19 방역수칙

마스크 착용하고  
거리두기



흐르는 물에  
자주 손 씻기



공용물품 자제하고  
환기, 소독하기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기



방역관리자 지정 운영하고  
방역수칙 안내하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명부작성하기



하루 3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 소독하기



공용물품 제공하지 않고,  
손 씻을 공간·손소독제 마련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맞춰  
이용인원 관리하기



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문의는  
가까운 보건소나 ☎ 1339로 전화주세요





2021.4.28.

# 마스크 착용!

## 장소별 기준과 착용 가이드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세요!”

실내

- 상시 마스크 착용

실외

-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 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이렇게 착용해 주세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 ✓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도록 밀착해서 착용하는 것이 중요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착용 가능한  
마스크의 종류

-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및 수술용 마스크
-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벨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마스크 착용!

주의해야 할 경우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 이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 시 주의하세요! ”



### ▪ 24개월 미만 영유아

※ 단, 아동 간 발달 상태가 다르므로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감독이 필요



###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

※ 마스크 착용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함



### ▪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소명 시 예외 인정 가능

# 마스크 착용!

## 위반 시 과태료 안내



★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지자체마다 과태료 부과대상

### 장소가 다를 수 있습니다!

- ✓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
- ✓ 관할 지자체별 행정명령 및 문의처는 코로나19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확인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홈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2021.05.24.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0판 부록3

##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바깥 외출 금지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도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 방문 담은 채로 창문 열어 자주 환기 시키기    • 식사는 혼자서 하기  
• 화장실과 세면대는 단독으로 사용(공동으로 사용 시 랙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로 먼저 연락하기

## ▣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및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차자 등 별도 이동수단 이용(대중교통 이용 불가)

## ▣ 응급상황\*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알리기 \*응급상황 예시 : 충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 가족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대상자를 포함하여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의복 및 침구류 단독세탁    • 식기류 등을 별도로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에 다른 사람이 사용 금지



## ▣ 건강 수칙 지키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    • 기침이 날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마스크가 없을 경우 소매로 가려 기침하기, 기침·재채기 후 손씻기·손소독하기

##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 의무적으로 설치

※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의 무단이탈 등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앱과 연동되는 손목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시설격리 조치, 격리 조치 위반자가 앱 설치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에도 즉시 시설격리 조치됨 (시설이용 비용을 자부담할 수 있음)

##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참조

## 자가모니터링 준수사항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에서 하루에 1회 이상 연락드릴 예정이니, 이때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을 알려주십시오.

- 매일 아침, 저녁 체온 측정
- 호흡기증상 등 감염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건강상태 체크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 이상), 기침, 호흡A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 담당보건소

○ 담당자

○ 긴급연락처

#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수칙

코로나19 대응지침 제10판 부록4



## ▣ 자가격리대상자와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동거인은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특히,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또는 동거인은 접촉 피하기  
※ 가능한 한 노인,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 암 등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등을 따로 생활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특수한 경우(돌봄서비스, 방문간호 등)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연락 후 방문

## ▣ 가족 또는 동거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가족(동거인 포함)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을 자주 소독하고 거주 공간 자주 환기

\* 테이블 위, 문손잡이, 조명 스위치, 수도꼭지, 냉장고 문고리, 키보드, 침대 옆 테이블 등

## ▣ 물과 비누 또는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손 자주 씻기

##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을 구분하여 사용하기 (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자가격리대상자의 식기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 ▣ 자가격리대상자의 건강상태 주의 깊게 관찰하기

## ▣ 자가격리대상자의 동거가족(동거인 포함)이 많은 사람과 접촉하거나 집단시설\*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감염병 발생 및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해제일까지 모임이나 업무 제한 권고

\* 집단시설 : 학교,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 ▣ 응급상황\*발생 시(112 또는 119에 신고 시) 출동대원에게 가족 및 동거인 중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음을 알리기

\* 응급상황 예시 : 중증질환 악화, 분만, 사고·재해 등

##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부록 13) 참조



### 코로나19 임상증상

- 주요 임상 발열(37.5 °C 이상), 기침, 호흡A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또는 폐렴
- 그 외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

자가격리대상자에게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발생할 경우  
먼저 관할 보건소(담당공무원)와 상의하거나  
질병관리청콜센터 국번없이 1339로 알리기

○ 담당보건소

○ 담당자

○ 긴급연락처

## 불임 6

## 사회복지시설 소독 안내

### 【 일상 소독 방법 [예] 】

#### 1. 지역사회 공공장소는 항상 청결 유지

가. 청소 및 소독 작업을 수행하는 직원은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

\*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 필요하면 일회용 방수용 긴팔 가운 또는 방수 앞치마,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나.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물체의 표면을 소독

#### ◆소독 부위 예시

- (1) 손잡이, 난간, 문고리, 팔걸이, 에어컨 콘센트, 스위치 등 다양한 접촉하는 장치 등
- (2) 사무실에서 자주 접촉하는 표면 (예 :키보드, 책상, 의자, 전화 등)
- (3) 화장실 : 수도꼭지, 화장실 문 손잡이, 변기 덮개 및 욕조 및 화장실 표면

- (방법) 알코올, 희석된 차아염소산나트륨이 충분히 묻은 천으로 닦기

\* 그 외 소독제의 종류별 특성 및 시설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

- (횟수) 하루에 한 번 이상 소독

- 다만, 소독제를 과도하게 사용하여 인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함

\*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습진 등 유발 하며 두통을 유발하는 불쾌한 냄새 등으로 사용 시에는 반드시 환풍기 사용과 함께 창문을 개방해서 사용

#### 2. 각 건물의 출입문 및 엘리베이터 등은 더 자주 청소 및 소독

- 출퇴근이 빈번한 경우 청소·소독 담당자는 소독제가 충분히 묻은 천으로 문 손잡이와 엘리베이터 버튼을 닦아야 함(예: 차아염소산나트륨 500ppm)

\* 500 ppm = 물 1000ml + 차아염소산나트륨(5%) 10ml

※ 소독제를 분사하는 소독방법은 적용범위가 불확실하고 에어로졸 생성을 촉진할 수 있으므로 표면 소독에 적용 자체

#### 3. 시설 관리자는 청소·소독 담당자에게 청소, 소독 및 개인보호 용품 (소독제, 종이타월 및 마스크 등)을 충분히 제공

## 【 환자 발생 시 집단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소독[예] 】

### 가급적이면 전문소독업체에 위탁 권고

1. 소독을 시작하기 전에 일회용 장갑,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건용 마스크 및 장화 등을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청소 및 소독을 하는 동안 얼굴(눈, 코, 입)을 만지지 않는다.
2. 소독제를 준비한다.
  - \* 제조업체의 주의사항 및 설명서 준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소독안내(2-1판 참조)
3. 환자가 이용한 공간(구역)의 경우 표면을 청소하고 소독하기 전에 오염이 확인된 장소를 표시하고, 오염된 물건은 밀폐한다.
4.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 둔다.
5. 준비된 소독제로 천(타올)을 적신 후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sup>\*</sup>와 화장실 표면을 닦는다.
  - \* 손잡이, 팔걸이, 책상, 의자, 키보드, 마우스, 스위치, 블라인드, 창문, 벽 등
6. 시트, 덮개 등은 세탁기에 세제나 소독제를 넣고 온수 세탁한다.
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가 사용했던 카펫, 쿠션 등은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하지 않는다.
  - \* 검사결과가 양성인 경우, 세탁이 어려운 카펫 등은 전문소독업체에 위탁하여 적절하게 소독하거나 스팀(고온) 소독
8. 소독에 사용한 모든 천(타올)과 소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전용봉투에 넣는다.
9. 일회용 가운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장갑을 벗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고글을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 보건용 마스크를 제거하고 비누와 물로 손을 씻는다.
11. 일회용 가운, 장갑과 마스크는 각각 벗을 때마다 전용봉투에 넣는다.
12. 소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다른 가정용 폐기물과 분리하여 처리한다.
13. 소독 후 즉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14. 소독한 장소를 환기시킨다.
15. 소독 후 14일 이내에 소독을 실시한 직원에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 시 시설 내 지정장소에서 머물게 하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역번호+120)에 문의

## 불임 7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신고 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 9-2판 참조)

### □ 아래 환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

- 확진자 : 임상 양상에 관계 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 의사환자 :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조사 대상 유증상자
  - ①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 ②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불임 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관련 정보

\* 바이러스 특성이 밝혀지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SARS-CoV-2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li></ul>
질병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법정감염병 :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li><li>질병 코드 : U07.1</li></ul>
병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SARS-CoV-2 : Coronaviridae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li></ul>
전파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현재까지는 비말(침방울), 접촉을 통한 전파로 알려짐<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생긴 비말(침방울)을 통한 전파 등</li><li>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진 뒤 눈, 코, 입을 만짐</li></ul></li></ul>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14일 (평균 4~7일)</li></ul>
진단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li><li>진단을 위한 검사기준<ul style="list-style-type: none"><li>검체에서 바이러스 분리</li><li>검체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li></ul></li></ul>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발열, 권태감, 기침, 호흡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다양한 호흡기감염증이 나타남<ul style="list-style-type: none"><li>그 외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도 나타남</li></ul></li></ul>
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치료 : 수액 보충, 해열제 등 보존적 치료</li><li>특이적인 항바이러스제 없음</li></ul>
치명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치명률은 1~2%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확실하지 않음</li><li>단, 고령,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가 주로 중증, 사망 초래</li></ul>
관리	<p>&lt;환자 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표준주의, 비밀주의, 접촉주의 준수</li><li>증상이 있는 동안 가급적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도록 권고</li></ul> <p>&lt;접촉자 관리&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감염증상 발생 여부 관찰</li></ul>
예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백신 없음</li><li>올바른 손씻기<ul style="list-style-type: none"><li>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li><li>외출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등 실시</li></ul></li><li>기침 예절 준수<ul style="list-style-type: none"><li>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li><li>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li></ul></li><li>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li></ul>

## 불임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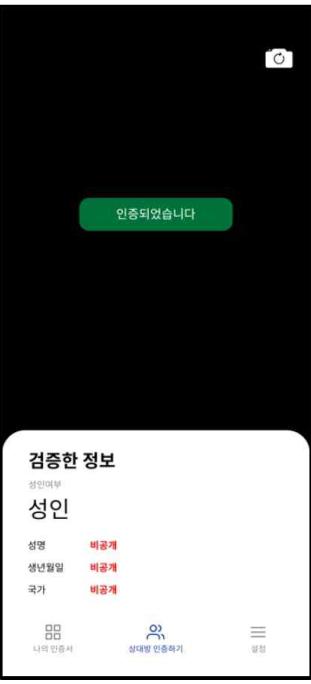
## 예방접종이력 확인 방법

- 예방접종자(1·2차)는 예방접종증명서(스마트폰 앱(COOV) 또는 종이증명서)를 제시하고, 시설의 방역관리자 등 현장책임자는 이를 확인

### 1.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확인

1-1. (예방접종자) 어플리케이션 (COOV)으로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제시		
---	--	--

1-2. (확인자)  
어플리케이션  
(COOV)에서  
QR코드 스캔하여  
검증

		
--	---	---

## 2. 종이 증명서(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한 확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0. 9. 11.>

제 호 No.		예방접종증명서 Certificate of Immunization		
성명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Month/Day/Year)		
주소 Address		성별 Sex		
접종명 Vaccine	접종차수 Vaccination Series	접종일 Date Given(Month/Day/Year)	접종기관 Provider/Clinic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의4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방접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all the above vaccinations were performed under Article 27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nd Article 22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above-mentioned Act.				
년      월      일 Year      month      day				
질병관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의료기관장 <b>직인</b> <b>Seal</b>				
Governor of ( )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or The head of ( ) Si/Gun/Gu, The head of ( ) medical institution				
210mm×297mm[백상지] 80g/m <sup>2</sup> (자활용품)				

### Q. 예방접종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 예방접종완료자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COOV) 설치\* 또는 종이로 된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을 통해 예방접종 증명 가능 (1차 접종자도 접종 사실 확인 가능)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앱 스토어(iOS)에서 'COOV' 검색-설치  
전자출입명부 방식과 동일하게 QR로 간편 인증 가능(4.14~)  
\*\* 접종기관 방문 또는 예방접종도우미([nip.kdca.go.kr](http://nip.kdca.go.kr)) / 정부24([www.gov.kr](http://www.gov.kr)) 접속하여 출력  
※ 발급기관 확대 추진(접종 의료기관→읍·면·동, 6월 예정)

## 서식1-1

## 시설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자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	14일차	15일차	16일차	17일차	~	종료일
예시 000	체온 ℃	오전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오후	38°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란		✓	✓	✓											
	④ 객담		✓					✓					✓			
예시 001	⑤ 기타			설사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예시 002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예시 003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 접촉되지 않은 거주자 및 종사자이므로 유행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기록해야함

## 서식1-2

## 시설 종사자 건강 모니터링 [예시]

연번	이름	소속	날짜	일시	체온(℃) <sup>1)</sup>	호흡기 증상 <sup>2)</sup>					특이사항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09:00	36.5	-	-	-	✓	설사	
				14:00							

## 서식2

### 접촉자 거주자(종사자) 모니터링 - 임상증상 기록지

대상지명	증상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9일차	10일차	11일차	12일차	13일차	14일차
예시 000	체온 ℃	오전	36.5° 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체온 ℃	오후	38°C	36.5° C	36.5° C	36.5° C	36.5° C	36.5°C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	✓				✓			✓				
	② 인후통					✓	✓							✓	✓	✓
	③ 호흡곤란		✓	✓	✓											
	④ 객담		✓					✓					✓			
예시 001	체온 ℃	오전														
	체온 ℃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예시 002	⑤ 기타		설사													
	체온 ℃	오전														
	체온 ℃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예시 003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체온 ℃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② 인후통															
예시 004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체온 ℃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예시 005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체온 ℃	오후														
	호흡기 증상															
예시 006	① 기침															
	③ 호흡곤란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체온 ℃	오후														
	호흡기 증상															
예시 007	② 인후통															
	④ 객담															
	⑤ 기타		—	—	—	—	—	—	—	—	—	—	—	—	—	—
	체온 ℃	오전														
	체온 ℃	오후														
	호흡기 증상															
	① 기침															

## 서식3-1

## 방문자 건강 모니터링 - 예시 (1)

날짜	일시	이름	소속	방문 목적	체온(°C) <sup>1)</sup>	호흡기 증상 <sup>2)</sup>						특이사항
						① 기침	② 인후통	③ 호흡곤란	④ 권태감	⑤ 기타		
					36.5	-	-	-	✓	설사		

1) 발열 카메라에서 인지되면 고막체온계로 재확인, 직접 체온계로 측정(측정하는 사람은 보건용 마스크와 장갑 착용하며 비접촉 체온계로 측정)

2) 호흡기 증상은 방문객이 직접 기록



## 서식4

##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리 체크리스트

○ 확인일시: 20 년 월 일 (요일) 시

○ 확인자: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 시설명: ( )

체크리스트	해당란에 ○ 표시		비고
	예	아니요	
<b>협력체계(1)</b>			
1. 비상연락체계 (격리시설-관할보건소 - 관할 시·군·구 및 시·도)	1.1. 마련 및 현행화 하였는가		
	1.2. 눈에 잘 띠는 곳에 비치되어 있는가		
<b>준수사항(8)</b>			
2.1.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직위: 성명: 연락처:
2.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외부인 시설 출입관리			
2.3. 시설 거주자의 면회·외출·외박 관리, 가족에게 안내 (※ 접촉면회 지침 확인할 것)			
2.4.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 체크 매일 2회(발열체크 등) 실시 및 기록			
2.5.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는 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 중단, ▲거주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2.6.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2.7.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2.8. 사회적(생활 속)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2.9. 격리실이 구비되어 있는가? (이용시설 : 대기공간 / 생활시설 : 격리실)			
<b>기타 특이사항</b>			
(자유기술)			

## 서식5

## 코로나19 대응 사회복지시설 요양보호사\* 모니터링 점검표

사회복지시설 명 : \_\_\_\_\_

감사 항목	내용 확인	적합성	부적합	증거 정보
1. 감염병 예방 체계 구축	요양보호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알고 환자를 돌보는 동안 마스크를 착용하고 점검 체계를 갖추어야합니다.			
	요양보호사는 올바른 손 위생을 따르고 비누와 물 또는 알코올 포함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을 수행하며 점검 체계가 있습니다.			
	자가 격리된 요양보호사는 관리 기간 동안 거주자 를 돌보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내 요양보호사의 출석 시간 과 장소를 통제하고 거주자의 지역을 떠나지 않아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요양보호사 명단 확보 및 보관 해야 합니다.			
2. 자원봉사자에 대한 규정	사회복지시설 출입 시간이 있으며, 출입 기간 동안에는 거주자를 봉사서비스를 하기 위해 증명서 발급된 자원봉사자만 출입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방문 시간 (예 : 아침, 정오 및 저녁) 을 설정합니다. 각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됩니다.			
	자원봉사자의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사회복지시설에 출입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자원봉사자의 이름, 연락처 및 주소, 방문시간 을 포함한 기록 하여 주십시오.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기전에 마스크 를 착용하고 손 위생, 및 기침 예절을 시행해야합니다.			
3. 요양보호사의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전담 직원은 요양보호사를 위해 매일 온도를 측정 하고 검사 기록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이나 호흡기 감염과 같은 증상을 모니터링하며 정기적 인 추적 및 조치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출근 하지 않습니다.			
4. 요양보호사 감염 관리 교육	손 위생, 기침예절, 개인 보호구 사용, 환경 및 소독 및 기타 관리 조치를 포함한 요양보호사의 교육 및 훈련을 합니다.			

\* 거주자와 접촉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모두 포함

검사관 서명 : \_\_\_\_\_ 검사 날짜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 참고1

## 사회복지시설 종류

속적 후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 복지부	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인주거복지시설</li> <li>◦ 노인의료복지시설</li> <li>◦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가노인복지시설</li> <li>◦ 노인여가복지시설</li> <li>◦ 노인보호전문기관</li> <li>◦ 노인일자리지원기관</li> </ul>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li> </ul>		
	아동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양육시설</li> <li>◦ 아동일시보호시설</li> <li>◦ 아동보호치료시설</li> <li>◦ 자립지원시설</li> <li>◦ 공동생활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상담소</li> <li>◦ 아동천용시설</li> <li>◦ 지역아동센터</li> <li>◦ 아동보호전문기관</li> <li>◦ 가정위탁지원센터</li> </ul>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유형별 거주시설</li> <li>◦ 중증장애인 거주시설</li> <li>◦ 장애영유아 거주시설</li> <li>◦ 장애인다기 거주시설</li> <li>◦ 장애인동생생활가정</li> <li>◦ 피해장애인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li> <li>◦ 장애인직업재활시설</li> <li>◦ 장애인의료재활시설</li> <li>◦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li> </ul>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li> </ul>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요약시설</li> <li>◦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li> </ul>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자활시설</li> <li>◦ 노숙인재활시설</li> <li>◦ 노숙인요양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숙인종합지원센터</li> <li>◦ 노숙인일시보호시설</li> <li>◦ 노숙인급식시설</li> <li>◦ 노숙인치료시설</li> <li>◦ 쪽방상담소</li> </ul>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결핵·한센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결핵·한센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관</li> </ul>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자활센터</li> </ul>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함께돌봄센터</li> </ul>	「아동복지법」
여성 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지원시설</li> <li>◦ 청소년지원시설</li> <li>◦ 외국인지원시설</li> <li>◦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활지원센터</li> <li>◦ 성매매피해상담소</li> </ul>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폭력피해상담소</li> </ul>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폭력상담소</li> <li>◦ 긴급전화센터</li> </ul>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li> <li>◦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li> <li>◦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li> <li>◦ 일시지원복지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li> </ul>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문화가족지원센터</li> </ul>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가정지원센터</li> </ul>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쉼터</li> <li>◦ 청소년자립지원관</li> <li>◦ 청소년치료재활센터</li> <li>◦ 청소년회복지원시설</li> </ul>		「청소년복지 지원법」